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666

발의연월일: 2021. 3. 9.

발 의 자: 이주환・한무경・金炳旭

윤창현 • 김예지 • 김용판

배준영 · 지성호 · 김기현

박대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, 거액의 대 출을 받아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음.

현행법은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,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에 관련 기관 종사자의 미공개정 보 이용 투기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,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함(안 제5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1항 중 "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,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"을 "특정 부동산 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 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(벌칙) ① 제9조제2항을 위	제57조(벌칙) ①
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	특정 부동산 등의 매매,
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,	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
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	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7년
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	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
<u>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<u>다만, 그 위반행</u>
<단서 신설>	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
	의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액의
	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
	는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
	역과 벌금을 병과(倂科)할 수
	있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